

---

# 2023학년도 대입전형(재외국민) 기본계획

---

본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교협 심의 결과나 본교 편제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김오공과대학교**

[입학본부]

# I

## 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예정)

1. 원서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2022. 07. 04.(월) ~ 08.(금)

※ 원서접수 일정 및 접수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음

2. 면접구술 및 실기고사 : 없음

3. 합격자 발표 : 2022. 11월 중

※ 순수외국인(화교 포함) 및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모집

# II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학과 및 전공(과)	입학정원의 2% 범위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모집단위별 10%)	입학정원의 2% 범위
기계공학과		8명	24명 이내
기계설계공학과		4명	
기계시스템공학과		12명	
전자공학부	정보전자전공	20명	
	제어및로봇전공		
	전자통신전공		
	전자및전파전공		
	전자IT융합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4명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7명	
	디자인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11명	
고분자공학과		3명	
소재디자인공학과		3명	
화학공학과		3명	
환경공학과		3명	
토목공학과		4명	
컴퓨터공학과		7명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명	
인공지능공학과		3명	
광시스템공학과		3명	
메디컬IT융합공학과		3명	
화학생명과학과		3명	
수리빅데이터학과		3명	
경영학과		4명	
<b>합 계</b>		<b>113명</b>	<b>24명</b>

※ 1.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2.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위의 모집인원에 관계 없이 선발할 수 있음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I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구분	자격요건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년)					학력요건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국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 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b>고교과 정 1개 학년 이상</b>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 <b>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 개 학년 이상</b> 수료한 자	3년	1개년 기간 마다 3/4 이상	3년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2.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는 재외국민

구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 여 위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 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본교 입학본부에서 지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3. 지원자격 관련기준 및 해설

<p>□ 국외근무자 및 자녀의 세부 지원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li> <li>-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b>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b>(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b>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b> 수료한 자</li> <li>- 국외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u>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li> <li>· <u>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u>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ul> </li> </ul>
--

□ **국외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마.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준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재학연한 인정기준**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기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기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거주기간, 학력, 조기졸업,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입학본부에서 결정함**

1. 전형방법 : 고등학교 교과성적 100%
2. 국외고 이수자 성적 산출 : 이수한 전과목에 대해 과목별 성적을 아래 표에 따라 석차등급 및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각 과목 등급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교과성적으로 반영

국외고 학생부 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100~97	96~90	89~87	86~80	79~77	76~70	69~67	66~60	60미만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 1. 성적이 없는 과목은 성적산출에서 제외

2. 최종 교과반영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출

### 3. 선발원칙

가.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입학전형요소 성적(국외고 학생부 교과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4. 선발방법

가.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자 모두를 모집단위별 후보자로 선발.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후보자 순으로 총원합격자를 선발

나.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의 20%범위(소수점은 절사하며, 최대선발가능인원의 20%가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 내에서 전체 지원자의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총 입학정원의 2% 이내 여석)은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각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선발.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자 모두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보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총원합격자로 선발함. 이 경우 후보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 다. 동점자 처리원칙

-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 1순위 : 국외고 학생부 교과성적 중 수학성적이 높은 자

2) 2순위 : 장기간 해외 수학을 한 자

-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장기간 해외 수학을 한 자

## V 제출서류

- 추후 모집요강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원본대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필요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li> <li>2. 입학원서(본교서식)</li> <li>3. 지원자 종합기록표(본교서식)</li> <li>4. 자기소개서(본교서식)</li> <li>5. 학업계획서(본교서식)</li> <li>6. 코로나-19 소명자료(해당자에 한함)</li> </ol>
국외 근무자의 자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4.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li> <li>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li> <li>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li> <li>7. 여권사본(부, 모, 학생)</li> <li>8. 재외국민등록등본(부, 모, 학생)</li> <li>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해당)</li> <li>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해당)</li> <li>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해당)</li> <li>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 증명서(현지 자영업자 해당)</li> </ol>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4. 출입국사실증명서</li> <li>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li> <li>6.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li> </ol>
북한이탈주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li> <li>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li> <li>3.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li> <li>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ol>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li> <li>4. 국적취득사실증명서(또는 귀화허가 통지서)</li> <li>5. 혼인관계증명서</li> <li>6. 출입국사실증명서</li> </ol>

※ 기본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